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5.11. 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11.16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share주식에 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90339
A	92438
C1	92439
C2	92440
C3	92441
C4	92442
C5	35871
Ce	92443
Cf	92444
Ci	93171
Cw	92445
S	AR4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90339
A	92438
C1	92439
C2	92440
C3	92441
C4	92442
C5	35871
Ce	92443
Cf	92444
Ci	93171
Cw	92445
S	AR4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 2.27	최초 설정
2010. 5. 3	판매회사 보수 등 변경
2010. 9.2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모투자신탁 추가 및 투자한도 정정
2010.10.22	운용역 변경(나영남 운용역-> 윤상아 운용역)
2012. 8.31	운용역 변경(임창규 운용역 →홍의석 운용역)
2013. 1.31	Cf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2013. 4.13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2014. 4. 8	S클래스 추가
2014. 9.18	운용역 변경(홍의석 운용역 →이종훈 운용역)
2015. 7.3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2015.11.16	환매수수료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 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위탁운용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11월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종훈	1972	VP	33개	9,195억	- 1999년 02월 고려대 경제학 졸업 - 2006년 05월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MBA 졸업 - 1999년 02월 ~ 2006년 06월 삼성화재 총무파트 - 2006년 07월 ~ 2008년 05월 삼성자산운용 법인영업팀 - 2008년 06월 ~ 2013년 03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마케팅팀 - 2013년 04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윤상아	1983	Associate	84개	15,246억	- 2007년 08월 고려대 경제학 학사 - 2008년 01월 ~ 2009년 01월 삼성자산운용 Credit Research팀 - 2009년 01월 ~ 2009년 08월 삼성자산운용 채권전략팀 - 2009년 09월 ~ 2012년 03월 삼성자산운용 채권4팀 - 2012년 03월 ~ 現 삼성자산운용 FI운용1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홍의석	2012. 8.31 ~ 2014. 9.17
이종훈	2014. 9.18 ~ 현재

주1) 2015.11. 9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Kelvin Tang (2015.11. 9 기준)
과거 운용경력	- 1990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FA - 1994 The University of Lancaster MBA - 1995 Impac Asset Management(HK) Limited

펀드매니저	Kelvin Tang (2015.11. 9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00 Tai Fook Fund Management Limited - 2002 DBS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06 Manulife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07 DBS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11 Samsung Asset Management(HongKong) L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1)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C2클래스 → C3클래스 → C4클래스 → C5클래스로 자동 전환됩니다.(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C2, C3, C4, 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 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1클래스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 클래스에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9. 2.27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1	2009. 2.27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	2010. 3. 2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3	2011. 2.28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4	2012. 2.27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5	2013. 2.27	C4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e	2009. 2.27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Cf	2015. 1.29	특정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채정법에 의한 기금, 100억 이상 매입한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Ci	2015. 6.24	50억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Cw	2014.11.25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수익증권
S	2014. 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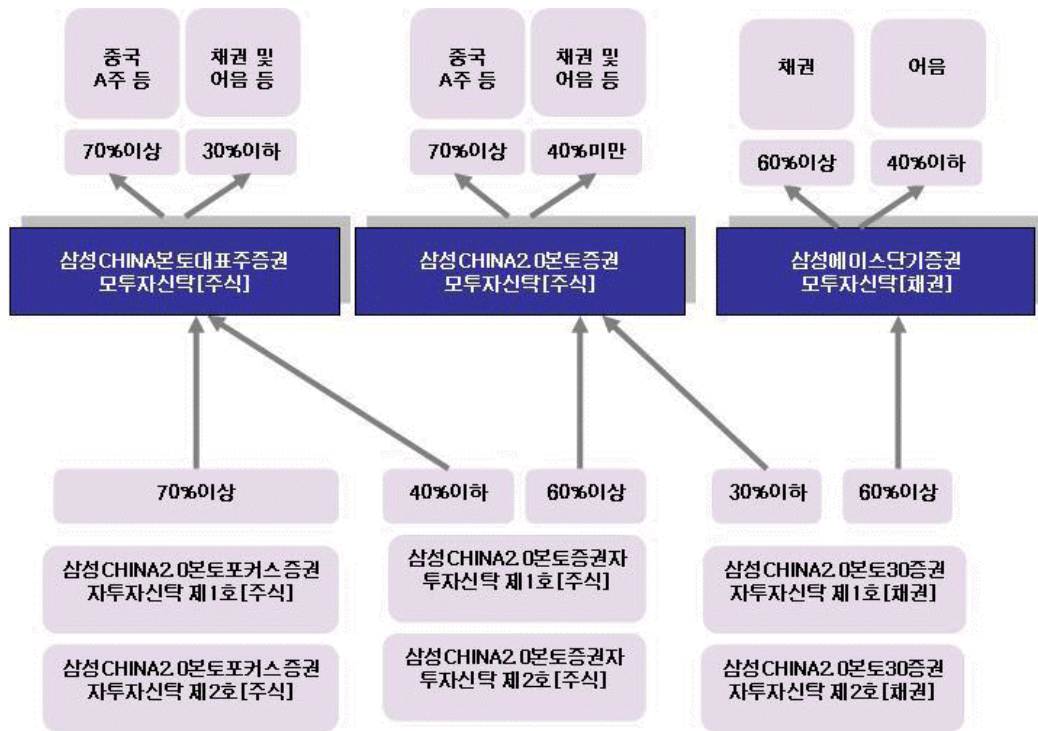
클래스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없음	0.85	0.89	0.06	-
C1	-	-	없음	0.85	1.50	0.06	-
C2	-	-	없음	0.85	1.40	0.06	-
C3	-	-	없음	0.85	1.30	0.06	-
C4	-	-	없음	0.85	1.20	0.06	-
C5	-	-	없음	0.85	1.10	0.06	-
Ce	-	-	없음	0.85	0.99	0.06	-
Cf	-	-	없음	0.85	0.03	0.06	-
Ci	-	-	없음	0.85	0.30	0.06	-
Cw	-	-	없음	0.85	0.00	0.06	-

S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 이 내	없음	0.85	0.35	0.06	-
---	---	--	----	------	------	------	---

주)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그림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다른 자 투자신탁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삼성재형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삼성재형차이나본토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삼성클래식차이나본토연금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삼성퇴직연금CHINA본토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주식등 70%이상(A주에의 투자는 70% 이상),채권 어음과 합산하여 40% 미만,어음 채권과 합산하여 40% 미만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A주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A주 시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 자세한 투자전략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주”라 함은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중국 역내회사가 발행하여 위안화로 거래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

삼성CHINA2.0본토 증권모투자신탁[주 식]		하 같음)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① <u>신탁재산 70%이상을 중국본토 증권시장에 상장된(혹은 상장을 위한 공모주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u>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회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③ 업종 배분 모델 및 종목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업종 투자 순위 및 투자매력도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입니다. 2) <u>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u>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운용역은 환율 관련 시황, 해지대금의 규모, 투자 대상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경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국 통화 또는 다른 통화를 활용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법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CSI300 지수를 매일의 원화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times 100\%$
	등록신청서 제출일	2009. 3.27
삼성CHINA본토대표 주증권모투자신탁[주 식]	주요투자대상	주식등 70%이상(A주에의 투자는 70% 이상),채권 30% 이하,어음 3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대표기업과 향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등이 발행하는 중국의 A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중국 A주 시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 “A주” 라 함은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중국 역내회사가 발행하여 위안화로 거래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① <u>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u>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집합

		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합니다. 2) 주식운용전략 ①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대표 핵심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 가치를 결정합니다. · 현재 중국 시장을 대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군 위주로 투자합니다. · 정부정책과 경제 발전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 예상되는 신성장 주식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시장 및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핵심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② 거시 경제 분석 및 업종 전망 분석을 통해 전략적 업종배분 전략을 실시합니다. ·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운용역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업종 배분 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③ 신탁재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상장시장별 차별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중국본토 B주와 홍콩시장 및 기타 제3국 등의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A주 관련 ETF 및 기타 중국 시장 관련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CSI300 지수를 매일의 원화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times 100\%$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300지수는 중국의 중증지수 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중국의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0. 9. 10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A주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대부분의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증권자

투자신탁[주식]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A주 시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감소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용하는 것을 추가적인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 “A주”라 함은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중국역내회사가 발행하여 위안화로 거래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 이상(단,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40% 이하)	신탁재산 70%이상을 해외주식등에 투자하되, 중국 A주에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신탁
2)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탁재산 70%이상을 중국의 대표기업과 향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등이 발행하는 중국의 A주에 투자
3)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4)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5)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6)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매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주식등	70%이상(A주에 의 투자는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에 한정)
채권	어음과 합산하여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어음	채권과 합산하여 40% 미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	--	-------

2)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주식등	70%이상(A주에 의 투자는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을 포함)
채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어음	3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	최초설정일로부터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터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아래의 투자제한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채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 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그 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중국 A주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그 주된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비교 지수 : CSI300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x 100%
- 1)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300지수는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 LTD)에서 중국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 2) CSI300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한 사유는 이 지수가 중국본토 증권시장인 상해와 심천증권시장 모두의 A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성종목이 유동성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므로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비교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므로 원화환산을 하지 않은 값을 비교지수로 활용합니다.
 - 3) CSI300지수는 중증지수유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sindex.com.cn>)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구성종목,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감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중국 위안화 등의 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달러화를 활용하여 보유한 외화표시투자자산의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투자대상인 파생상품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으로 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황, 해당 통화 펀더멘탈 및 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4)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5)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80 ~ 110	84.90	15.10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한 비율	환율변화와 동일한 방향 손익이 발생한 비율

주1)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 변동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주2) 목표한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삼성CHINA2.0본토증권모 투자신탁[주식]	1) 기본 운용전략 ① <u>신탁재산 70%이상을 중국본토 증권시장에 상장된(혹은 상장을 위한 공모주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u>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회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③ 업종 배분 모델 및 종목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업종 투자순위 및 투자매력도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입니다. 2) <u>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u>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운용역은 환율 관련 시황, 헤지대금의 규모, 투자 대상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경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국 통화 또는 다른 통화를 활용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법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CSI300 지수를 매일의 원화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 100%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 운용전략 ① <u>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u>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합니다.

2) 주식운용전략

①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대표 핵심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 가치를 결정합니다.

- 현재 중국 시장을 대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군 위주로 투자합니다.
- 정부정책과 경제 발전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 예상되는 신성장 주식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시장 및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핵심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② 거시 경제 분석 및 업종 전망 분석을 통해 전략적 업종배분 전략을 실시합니다.

-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운용역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업종 배분 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③ 신탁재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상장시장별 차별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중국본토 B주와 홍콩시장 및 기타 제3국 등의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A주 관련 ETF 및 기타 중국 시장 관련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CSI300 지수를 매일의 원화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times 100\%$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300지수는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중국의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구분	대상 국가	내용설명
이머징아시아	CHINA	○ 개요 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과거 30년간 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계획경제체제로 변모.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및 세계 1위의 수출국 - 인구: 13.5억 명(인구증가율: 0.44%, 평균기대수명: 75.15년) ○ 시장현황 - 1인당 GDP(PPP): USD 12,900('14년), 미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경제규모 - 줄어드는 국내 저축율, 내수소비부진, 고임금 일자리 부족 등이 중국의 경제 성장율을 낮추게 하는 요인 ○ 거래제도 - 사용 통화: Chinese renminbi(CNY) -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Shenzhen Stock Exchange - 예탁기관: China Securities Depository & Clearing Corporation Limited(CSDCC) (상해와 심천으로 분리되어 있음) - 결제제도: A-SHARE(당일결제), B-SHARE(T+3일) - 입금 및 송금 제한: 월 1회 - 외국인 투자제한: A-SHARE의 경우 개별 주식의 10% 이상 보유 제한

주) 상기의 국가 개요는 이 투자신탁재산(모투자신탁 포함)으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에 열거된 국가라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개요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국가개요의 내용이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 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환율에 대한 환헷지 거래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중국, 중화권 지역 등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본토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 역시 환헷지 거래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 및 기타 국가 등의 통화가치의 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모투자신탁이 신탁재산을 해당 국가, 지역의 통화로 전환(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 과정도 포함)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업자의 환헷지거래에도 불구하고 헷지거래대상 통화가 환헷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헷지거래가 전액 실행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기타국가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수익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금액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본토 등에 외국 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 및 홍콩달러 등을 활용한 유효한 환헷지전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적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환헷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환헷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헷지가 되지 않거나 환율변동 및 환매규모 등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수익자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회수 연기 위험	이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약관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송금규제정책은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된 이후의 최초의 중국본토 투자 시점에서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환매연기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외환관리규정상 QFII 투자자금(이익금 포함)의 해외송금을 주 1회로 제한하되, 매월 기준으로 한달간 누적된 순입출금액이 전년말 동 펀드 본토투자총자산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환매대금 수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및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국가위험 및 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위험 회피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현재('09.2월 현재)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 대외송금등이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해외 기타의 국가와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외환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헷지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은 중국 외환시장에 적절한 환헷지 수단이 존재할 때까지는 미국달러나 기타 환헷지가 가능한 외국통화(홍콩달러, 엔화 등)(이하 '미국달러등'이라 함)를 활용하여 환율변동위험 감소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환헷지전략을 수행할 경우, 환헷지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인 미국달러등과 위안화 간의 상관관계등을 고려하여 환헷지 비율을 변경해가는 방식으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환헷지전략이 추구하는 바는 한국원화-미국달러등-중국위안화 간의 환헷지를 목표로 하되 미국달러등-중국위안화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원화-미국달러등에 유효한 환헷지 방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헷지 전략의 결과가 한국원화와 미국달러등 간의 환헷지에만 유효하고 한국원화와 중국위안화간의 헷지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율간 상관관계, 개별국가 외환자금시장의 변화, 기타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화 및 개별 통화간의 변동성이 상이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헷지 전략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FII의 지위 취소 또는 투자제한에 따 른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QFII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본토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 사 변경에 따른 위 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사의 운용방법 및 운용전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국본토주식 등의 유가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 세제상 위험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A주에 투자하는 삼성 China 2.0본토주식모펀드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하여 소급 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이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소급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A주 관련 세제 변경 가능성 및 그 대응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투자규모 제한으로 인한 위험	QFII로서 중국 A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자금 규모가 USD 20millions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모집금액이 USD 20millions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중국 A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종 모집금액이 USD 20millions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본토의 A주에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2등급 : 높은위험
- 3등급 : 중간위험
- 4등급 : 낮은위험
- 5등급 : 매우낮은위험



<삼성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위험자산^{주1)}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주1)}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의 최대편입비가 6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추구형) - A-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듀레이션 3년미만)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글로벌 채권 등인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는 국내투기등급채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투기등급이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투자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주2)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3)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삼성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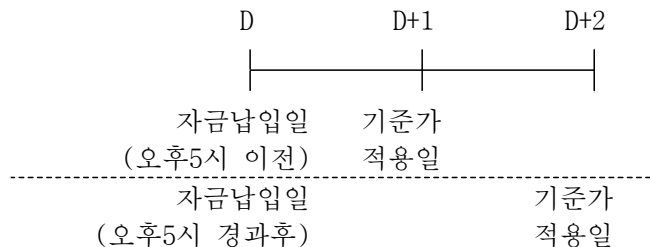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C1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2클래스 :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3클래스 :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4클래스 :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5클래스 : C4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e클래스 :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 Cf클래스 : 특정금전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100억 이상 매입한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7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 Ci클래스 : 50억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Cw클래스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수익증권
- S클래스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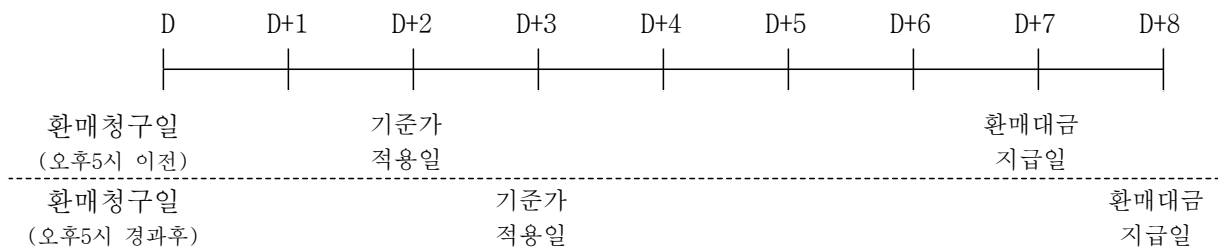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1)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부. 3.집합투자기구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2) 수시공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①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지급
- ②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대금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순연하여 적용

-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A클래스	없음	환매시
C1클래스	없음	환매시
C2클래스	없음	환매시
C3클래스	없음	환매시
C4클래스	없음	환매시
C5클래스	없음	환매시
Ce클래스	없음	환매시
Cf클래스	없음	환매시
Ci클래스	없음	환매시
Cw클래스	없음	환매시
S클래스	없음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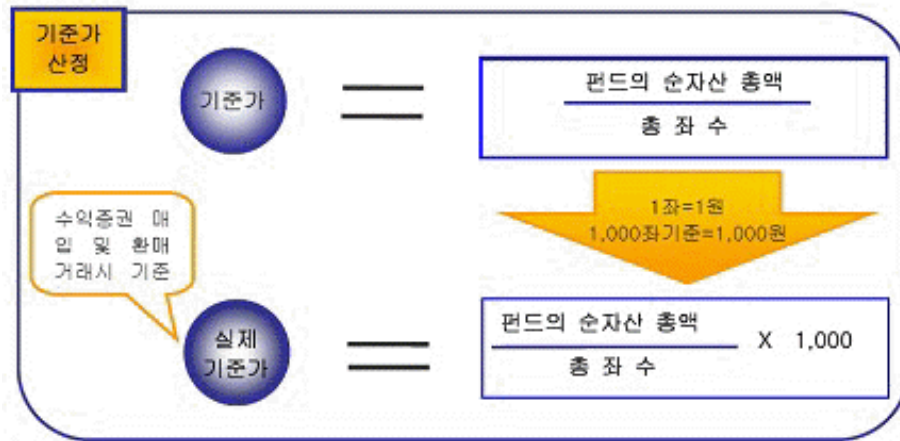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2% 이내	-	없음	-
C1	제한없음	-	-	없음	-
C2	C1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C3	C2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C4	C3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C5	C4클래스 가입자	-	-	없음	-
Ce	온라인용	-	-	없음	-
Cf	집합투자기구 등	-	-	없음	-
Ci	50억 이상 매입 한 수익자	-	-	없음	-
Cw	Wrap 계좌전용	-	-	없음	-
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등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723	1.8723	1.8723	0.5777
C1	0.85	1.50	0.06	-	0.0741	2.4841	2.4841	0.63
C2	0.85	1.40	0.06	-	0.0721	2.3821	2.3821	0.5696
C3	0.85	1.30	0.06	-	0.0723	2.2823	2.2823	0.5574
C4	0.85	1.20	0.06	-	0.0702	2.1802	2.1802	0.4338
C5	0.85	1.10	0.06	-	0.0728	2.0828	2.0828	0.6547
Ce	0.85	0.99	0.06	-	0.0726	1.9726	1.9726	0.5879
Cf	0.85	0.03	0.06	-	0.0523	0.9923	0.9923	0.2695
Ci	0.85	0.30	0.06	-	0.069	1.279	1.279	0.563
Cw	0.85	0.00	0.06	-	0.0191	0.9291	0.9291	0.1809

S	0.85	0.35	0.06	-	0.0618	1.3218	1.3218	0.5767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상기의 판매회사보수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Ce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적용 기간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9-06 ~ 2011-05-02	1.29
2011-05-03 ~ 2012-05-02	1.19
2012-05-03 ~ 2013-05-02	1.09
2013-05-03 ~ 신탁해지일까지	0.99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클래스	184,983	583,160	1,022,149	2,326,699
		선취 판매수수료 : 1,000만원 X 1.2% = 120,000원			
	C1클래스 가입자 로 자동 전환시	248,410	750,154	1,255,705	2,724,550
	Ce클래스	197,260	621,862	1,089,986	2,481,115
	Cf클래스	99,230	312,823	548,308	1,248,104
	Ci클래스	127,900	403,205	706,728	1,608,712
	Cw클래스	92,910	292,899	513,386	1,168,612
	S클래스	146,982	416,697	730,378	1,662,546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정율식으로 인하되는 판매회사 보수분은 미반영)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C5클래스로 자동 전환 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 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2) S클래스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모두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1) 삼성재형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재형 차이나본 토증권자 투자신탁 제1호[주 식]	0.59	0.50	0.05	-	0.0689	1.2089	1.2089	0.5774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삼성재형차이나본토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재형 차이나본 토40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 합]	0.34	0.50	0.03	-	0.0258	0.8958	0.8958	0.2214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204	1.1204	1.1204	0.1984
C1	0.49	0.95	0.06	-	0.0029	1.5029	1.5029	0.0402
C2	0.49	0.86	0.06	-	실비	1.41	1.41	실비
C3	0.49	0.77	0.06	-	실비	1.32	1.32	실비
C4	0.49	0.69	0.06	-	실비	1.24	1.24	실비
Ce	0.49	0.72	0.06	-	0.0199	1.2899	1.2899	0.1603
Cf	0.49	0.06	0.06	-	실비	0.61	0.61	실비
Cw	0.49	0.00	0.06	-	0.0071	0.5571	0.5571	0.0731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652	1.8652	1.8652	0.5607
C1	0.85	1.50	0.06	-	0.0668	2.4768	2.4768	0.6357
C2	0.85	1.40	0.06	-	0.0643	2.3743	2.3743	0.5862
C3	0.85	1.30	0.06	-	0.0644	2.2744	2.2744	0.4923
C4	0.85	1.20	0.06	-	0.0645	2.1745	2.1745	0.5407
C5	0.85	1.10	0.06	-	0.0659	2.0759	2.0759	0.7397
Ce	0.85	0.99	0.06	-	0.0659	1.9659	1.9659	0.6273
Cf	0.85	0.06	0.06	-	실비	0.97	0.97	실비
Ci	0.85	0.30	0.06	-	실비	1.21	1.21	실비
Cw	0.85	0.00	0.06	-	0.0355	0.9455	0.9455	0.6291
S	0.85	0.35	0.06	-	0.0553	1.3153	1.3153	0.6165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상기의 판매회사보수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Ce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적용 기간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9-06 ~ 2011-05-02	1.29
2011-05-03 ~ 2012-05-02	1.19
2012-05-03 ~ 2013-05-02	1.09
2013-05-03 ~ 신탁해지일까지	0.99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삼성퇴직연금CHINA본토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퇴직 연금 CHINA본 토포커스 40증권자 투자신탁 제1호[채 권혼합]	0.45	0.75	0.06	-	0.0343	1.2943	1.2943	0.4285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76	1.876	1.876	1.1989
C1	0.85	1.50	0.06	-	0.07	2.48	2.48	1.2446

C2	0.85	1.40	0.06	-	0.0823	2.3923	2.3923	1.2103
C3	0.85	0.99	0.06	-	0.0741	1.9741	1.9741	1.215
C4	0.85	0.90	0.06	-	0.076	1.886	1.886	1.208
Ce	0.85	0.95	0.06	-	0.0727	1.9327	1.9327	1.2808
Cf	0.85	0.10	0.06	-	0.0378	1.0478	1.0478	0.5793
Cw	0.85	0.00	0.06	-	0.0353	0.9453	0.9453	0.6079
Cp(퇴직 연금)	0.85	0.80	0.06	-	0.039	1.749	1.749	0.4432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삼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21	1.121	1.121	0.3225
C	0.49	0.95	0.06	-	0.0164	1.5164	1.5164	0.2635
Ce	0.49	0.72	0.06	-	실비	1.27	1.27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삼성클래식차이나본토연금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C	0.65	0.95	0.05	-	0.0797	1.7297	1.7297	1.069
Ce	0.65	0.475	0.05	-	0.0718	1.2468	1.2468	0.9778
S-P	0.65	0.28	0.05	-	0.0806	1.0606	1.0606	1.1394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5	0.60	0.04	-	실비	1.09	1.09	실비
Ae	0.45	0.30	0.04	-	실비	0.79	0.79	실비
C	0.45	1.00	0.04	-	실비	1.49	1.49	실비
Ce	0.45	0.50	0.04	-	실비	0.99	0.99	실비
Cf	0.45	0.03	0.04	-	실비	0.52	0.52	실비
Ci	0.45	0.30	0.04	-	실비	0.79	0.79	실비
C-P	0.45	0.90	0.04	-	실비	1.39	1.39	실비
Cp(퇴직 연금)	0.45	0.75	0.04	-	실비	1.24	1.24	실비
S	0.45	0.25	0.04	-	실비	0.74	0.74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066	1.1066	1.1066	0.1242
C	0.49	0.95	0.06	-	0.0121	1.5121	1.5121	0.2139
Ce	0.49	0.72	0.06	-	실비	1.27	1.27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194	1.1194	1.1194	0.1207
C1	0.49	0.95	0.06	-	실비	1.50	1.50	실비
C2	0.49	0.86	0.06	-	실비	1.41	1.41	실비
C3	0.49	0.77	0.06	-	실비	1.32	1.32	실비
C4	0.49	0.69	0.06	-	실비	1.24	1.24	실비
Ce	0.49	0.72	0.06	-	0.0196	1.2896	1.2896	0.1379
Cf	0.49	0.06	0.06	-	실비	0.61	0.61	실비

Cw	0.49	0.00	0.06	-	실비	0.55	0.55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676	1.8676	1.8676	1.2098
C1	0.85	1.50	0.06	-	0.0508	2.4608	2.4608	1.0573
C2	0.85	1.40	0.06	-	0.0306	2.3406	2.3406	0.5758
C3	0.85	0.99	0.06	-	0.064	1.964	1.964	1.2615
C4	0.85	0.90	0.06	-	0.0677	1.8777	1.8777	1.1985
Ce	0.85	0.95	0.06	-	0.0632	1.9232	1.9232	1.2503
Cf	0.85	0.10	0.06	-	실비	1.01	1.01	실비
Cp(퇴직 연금)	0.85	0.84	0.06	-	실비	1.75	1.75	실비
Cp-f(퇴 직연금)	0.85	0.01	0.06	-	실비	0.92	0.92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 6기, 5기, 4기의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6기 (2015. 2.26)	5기 (2014. 2.26)	4기 (2013. 2.26)
자산총계	163,166	186,750	248,229
운용자산	151,869	185,813	247,686
증권	144,697	179,017	237,702
파생상품	-164	-633	-4,46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336	7,429	14,445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1,297	937	543
부채총계	2,685	823	55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85	823	551
자본총계	160,481	185,928	247,678
원본	133,373	242,678	276,916
수익조정금	15,408	5,554	-1,710
이익잉여금	11,701	-62,304	-27,528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6기 (2014. 2.27~2015. 2.26)	5기 (2013. 2.27~2014. 2.26)	4기 (2012. 2.27~2013. 2.26)
운용수익	68,483	-33,031	-1,651
이자수익	76	160	220
배당수익	8,602	0	0
매매/평가차익(손)	59,672	-33,201	-1,886
기타수익	133	9	15

항목	6기 (2014. 2.27~2015. 2.26)	5기 (2013. 2.27~2014. 2.26)	4기 (2012. 2.27~2013. 2.26)
운용비용	32	36	24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9	6	0
기타비용	12	30	24
당기순이익	68,451	-33,067	-1,675
매매회전율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클래스	2015.2.27 ~2015.8.26	803	803	345	345	572	572	576	576
	2014.2.27 ~2015.2.26	1,368	1,368	211	211	848	848	730	730
	2013.2.27 ~2014.2.26	1,559	1,559	170	170	360	360	1,369	1,369
	2012.2.27 ~2013.2.26	1,457	1,457	366	366	267	267	1,557	1,557
C1클래스	2015.2.27 ~2015.8.26	83	83	431	431	223	223	291	291
	2014.2.27 ~2015.2.26	24	24	86	86	33	33	77	77
	2013.2.27 ~2014.2.26	67	67	46	46	89	89	24	24
	2012.2.27 ~2013.2.26	110	110	78	78	124	124	65	65
C2클래스	2015.2.27 ~2015.8.26	13	13	2	2	12	12	3	3
	2014.2.27 ~2015.2.26	61	61	32	32	81	81	12	12
	2013.2.27 ~2014.2.26	31	31	67	67	38	38	60	60
	2012.2.27 ~2013.2.26	84	84	120	120	172	172	31	31
C3클래스	2015.2.27 ~2015.8.26	31	31	13	13	22	22	23	23
	2014.2.27 ~2015.2.26	27	27	42	42	40	40	29	29
	2013.2.27 ~2014.2.26	150	150	34	34	157	157	27	27
	2012.2.27 ~2013.2.26	130	130	163	163	143	143	150	150

C4클래스	2015.2.27 ~2015.8.26	14	14	2	2	14	14	2	2
	2014.2.27 ~2015.2.26	111	111	21	21	121	121	11	11
	2013.2.27 ~2014.2.26	103	103	118	118	110	110	111	111
	2012.2.27 ~2013.2.26	0	0	112	112	9	9	103	103
C5클래스	2015.2.27 ~2015.8.26	119	119	9	9	74	74	54	54
	2014.2.27 ~2015.2.26	86	86	87	87	80	80	94	94
	2013.2.27 ~2014.2.26	0	0	99	99	13	13	86	86
Ce클래스	2015.2.27 ~2015.8.26	145	145	261	261	197	197	209	209
	2014.2.27 ~2015.2.26	108	108	99	99	76	76	132	132
	2013.2.27 ~2014.2.26	121	121	32	32	45	45	108	108
	2012.2.27 ~2013.2.26	84	84	62	62	25	25	122	122
Cf클래스	2015.2.27 ~2015.8.26	100	100	412	412	356	356	156	156
	2014.2.27 ~2015.2.26	526	526	100	100	526	526	100	100
	2013.2.27 ~2014.2.26	610	610	416	416	500	500	526	526
	2012.2.27 ~2013.2.26	605	605	416	416	412	412	610	610
Ci클래스	2015.2.27 ~2015.8.26	252	252	323	323	252	252	323	323
	2014.2.27 ~2015.2.26	200	200	251	251	200	200	251	251
	2013.2.27 ~2014.2.26	200	200	0	0	0	0	200	200
	2012.2.27 ~2013.2.26	200	200	0	0	0	0	200	200
Cw클래스	2015.2.27 ~2015.8.26	17	17	90	90	49	49	58	58
	2014.2.27 ~2015.2.26	0	0	13	13	0	0	13	13
	2013.2.27 ~2014.2.26	0	0	0	0	0	0	0	0
	2012.2.27 ~2013.2.26	0	0	0	0	0	0	0	0
S클래스	2015.2.27 ~2015.8.26	2	2	3	3	3	3	3	3
	2014.4.23 ~2015.2.26	0	0	2	2	0	0	2	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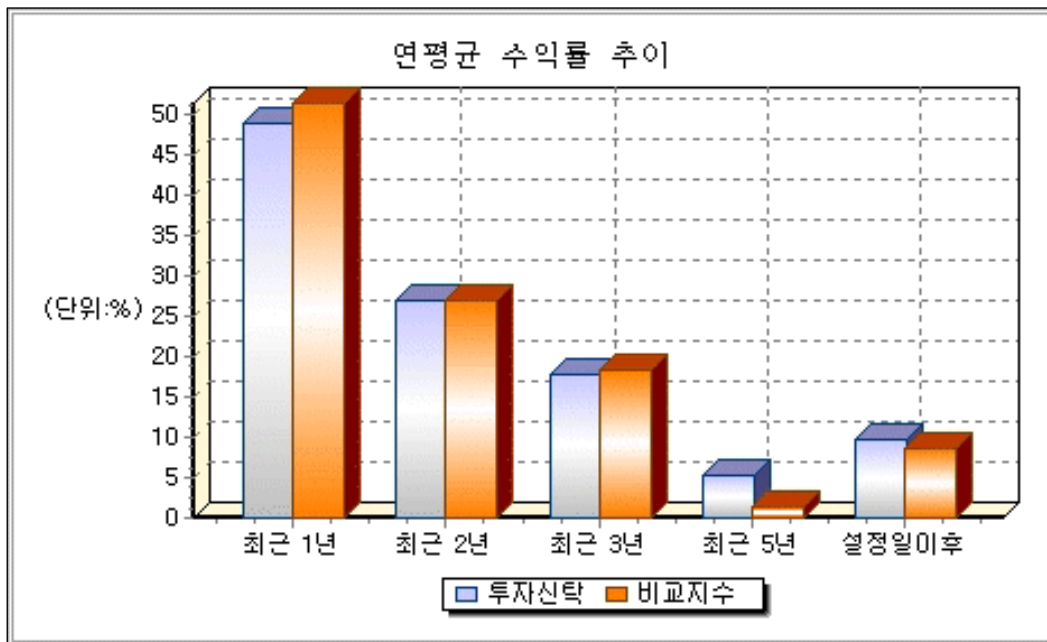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1)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10.11.07 ~15.11.06)	설정일 이후 (09.02.27 ~15.11.06)
투자신탁	48.93 %	26.83 %	17.83 %	5.19 %	9.71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50 %	8.55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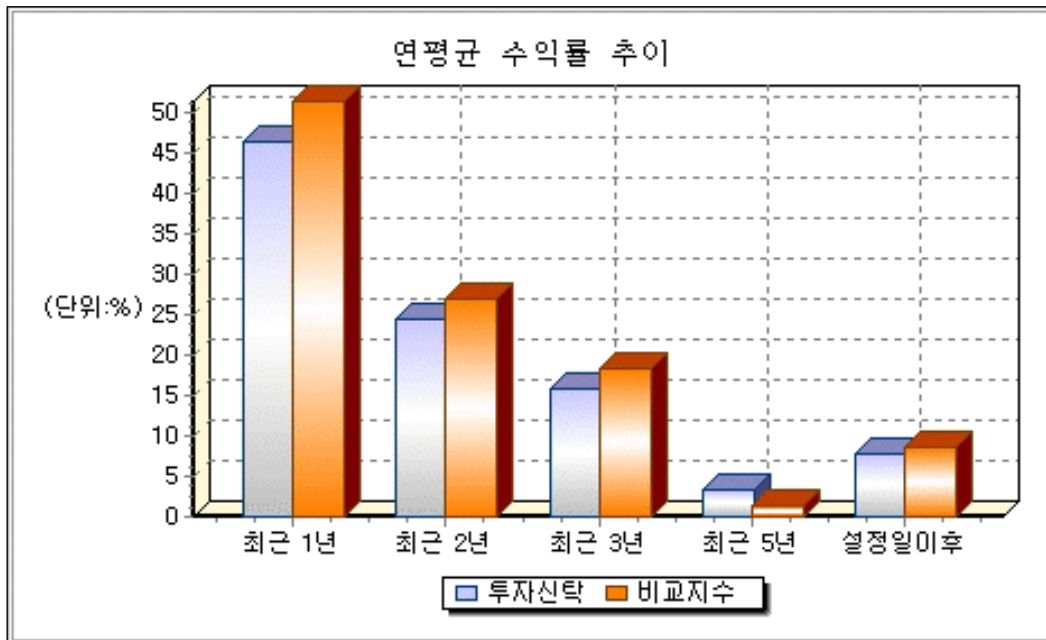


(2)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A)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10.11.07 ~15.11.06)	설정일 이후 (09.02.27 ~15.11.06)
투자신탁	46.27 %	24.56 %	15.72 %	3.30 %	7.74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50 %	8.55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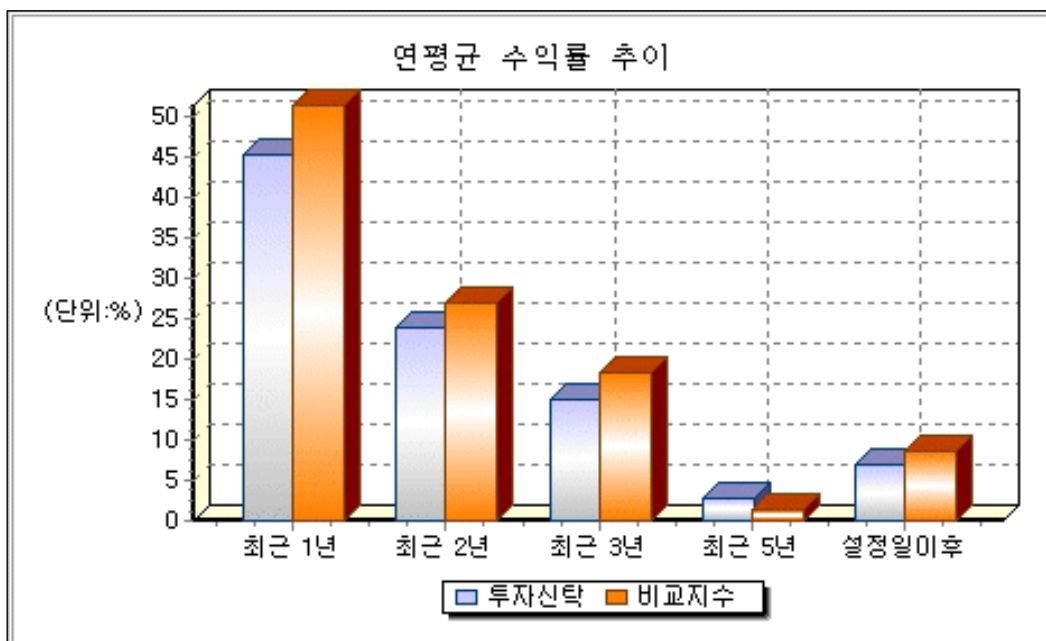


(3)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1)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10.11.07 ~15.11.06)	설정일 이후 (09.02.27 ~15.11.06)
투자신탁	45.30 %	23.77 %	15.00 %	2.66 %	7.02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50 %	8.55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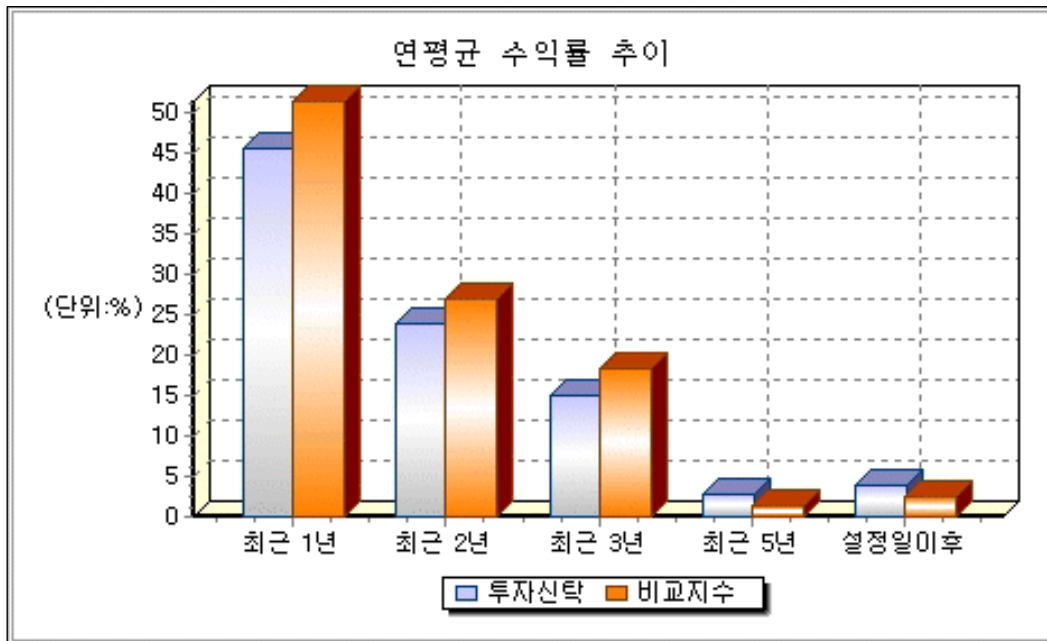


(4)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2)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10.11.07 ~15.11.06)	설정일 이후 (10.03.02 ~15.11.06)
투자신탁	45.53 %	23.93 %	15.13 %	2.77 %	3.97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50 %	2.58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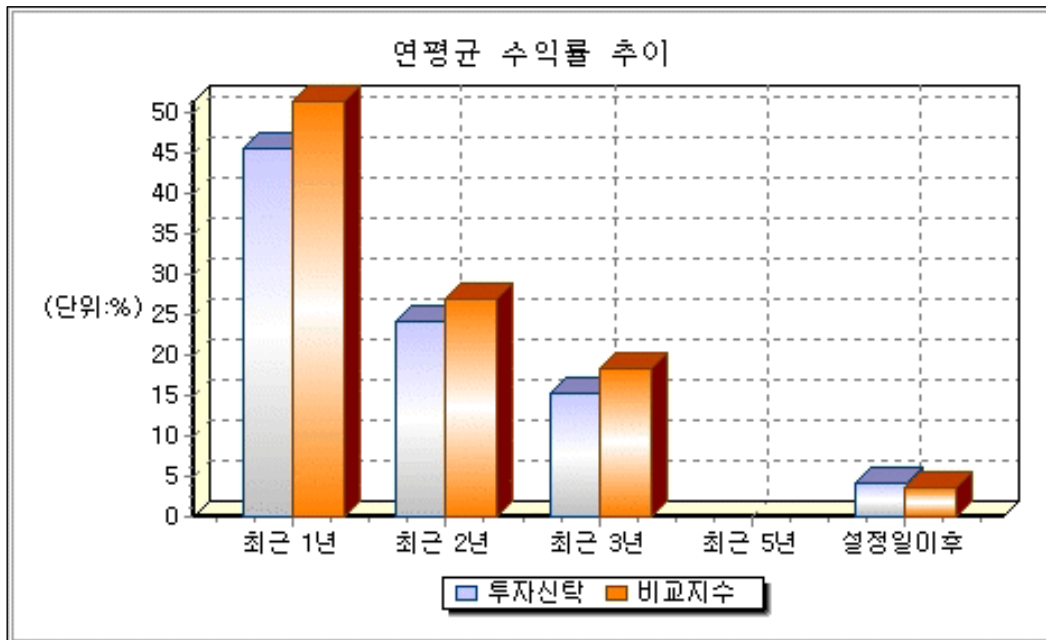


(5)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3)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2.28 ~15.11.06)
투자신탁	45.67 %	24.05 %	15.25 %		4.16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3.71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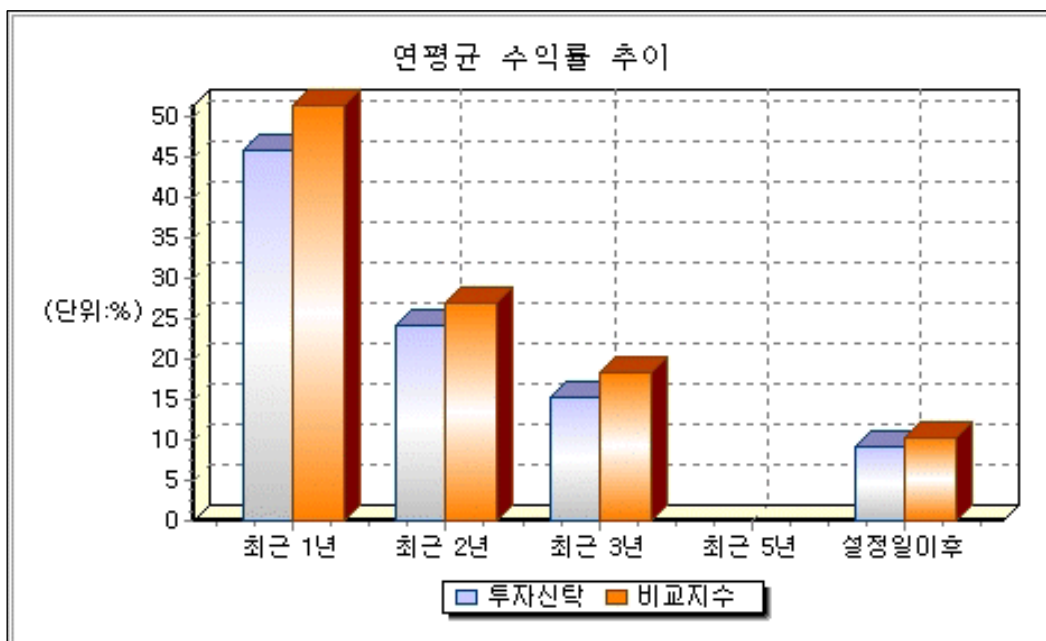


(6)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4)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2.27 ~15.11.06)
투자신탁	45.82 %	24.18 %	15.36 %		9.05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0.21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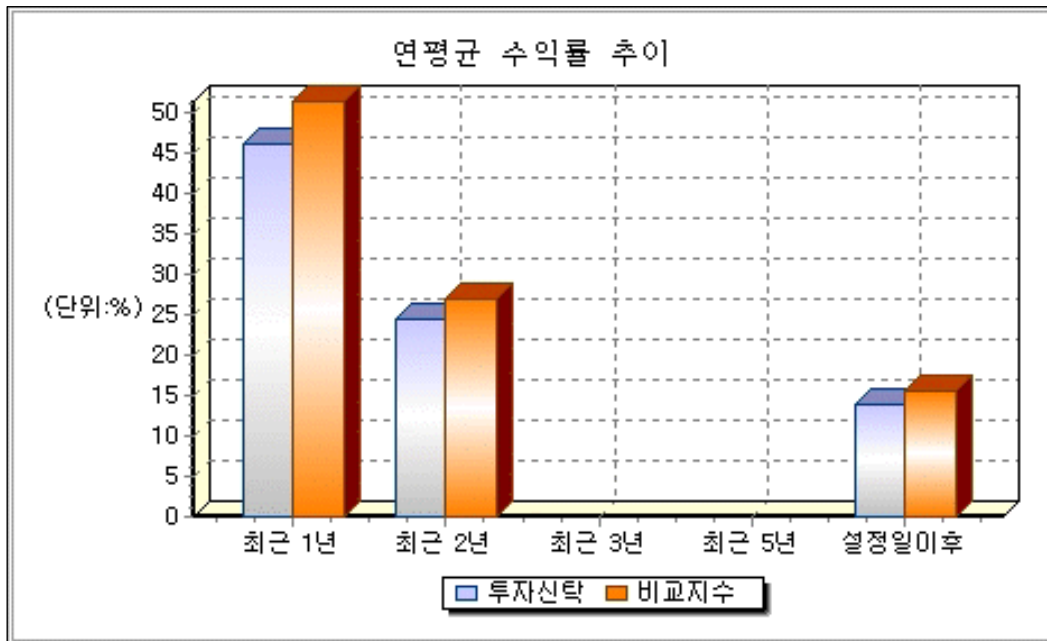


(7)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5)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2.27 ~15.11.06)
투자신탁	45.96 %	24.30 %			14.01 %
비교지수	51.37 %	26.95 %			15.59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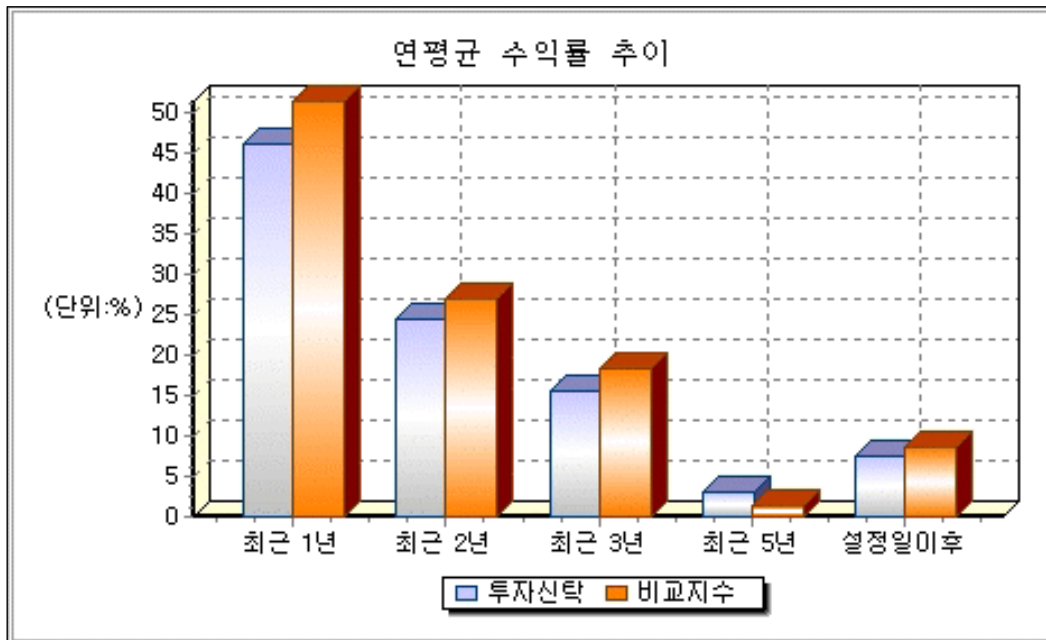


(8)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e)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13.11.07 ~15.11.06)	최근 3년 (12.11.07 ~15.11.06)	최근 5년 (10.11.07 ~15.11.06)	설정일 이후 (09.02.27 ~15.11.06)
투자신탁	46.11 %	24.44 %	15.58 %	3.10 %	7.46 %
비교지수	51.37 %	26.95 %	18.28 %	1.50 %	8.55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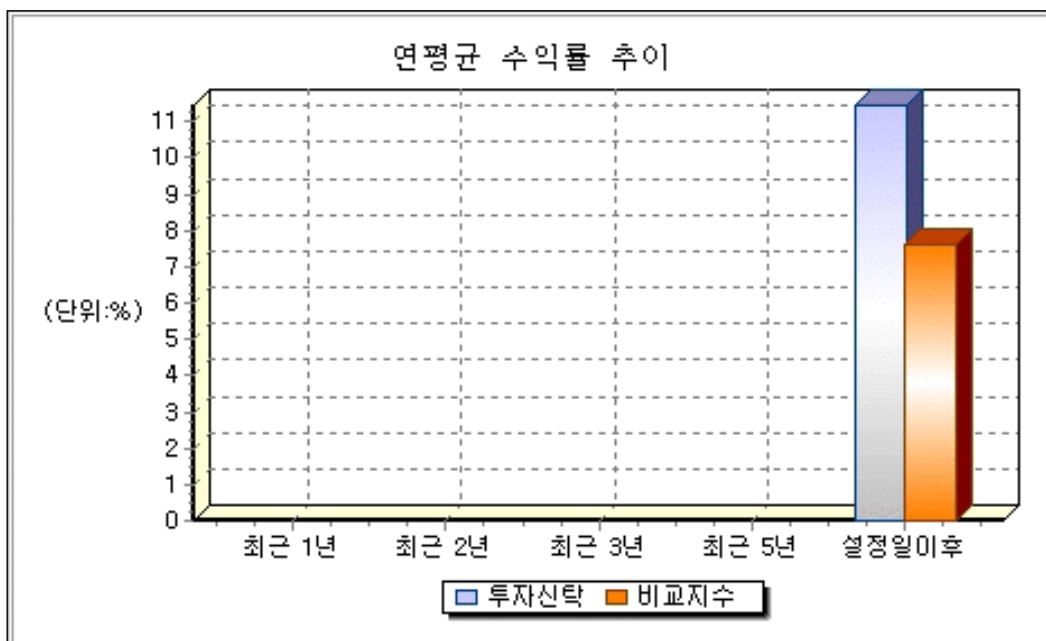


(9)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f)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5.01.29 ~15.11.06)
투자신탁					11.45 %
비교지수					7.6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0)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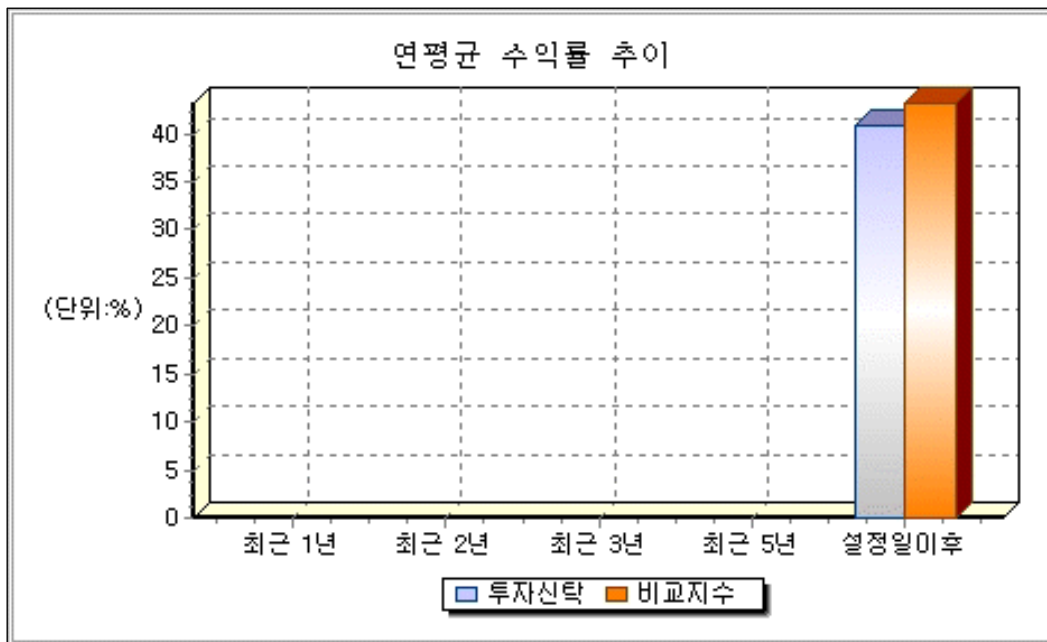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1)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w)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11.25 ~15.11.06)
투자신탁					40.81 %
비교지수					43.19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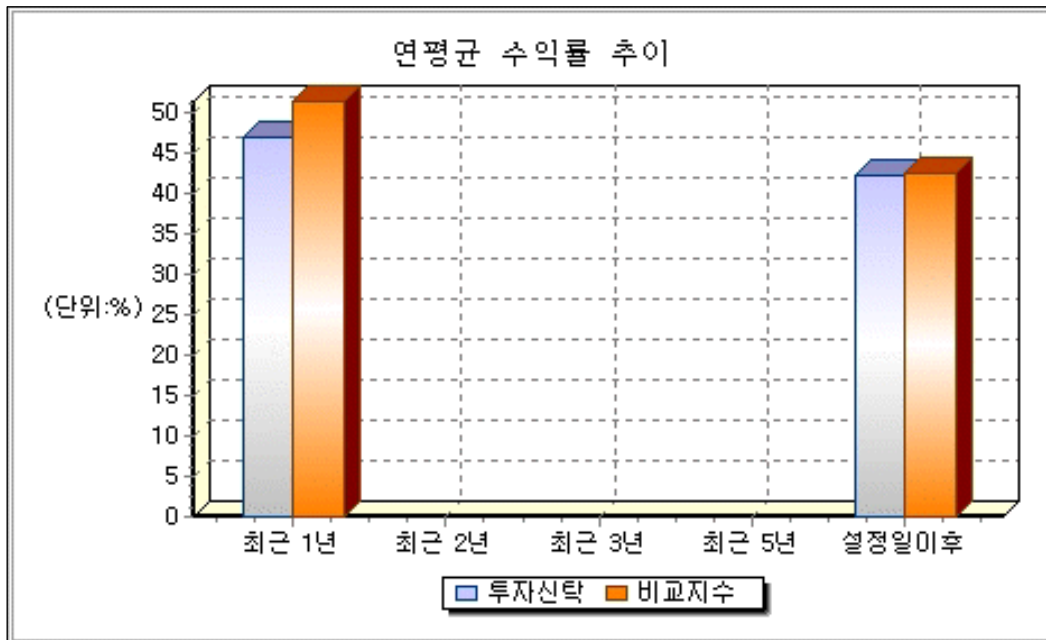


(12)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S)

연도	최근 1년 (14.11.07 ~15.11.06)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04.23 ~15.11.06)
투자신탁	47.05 %				42.18 %
비교지수	51.37 %				42.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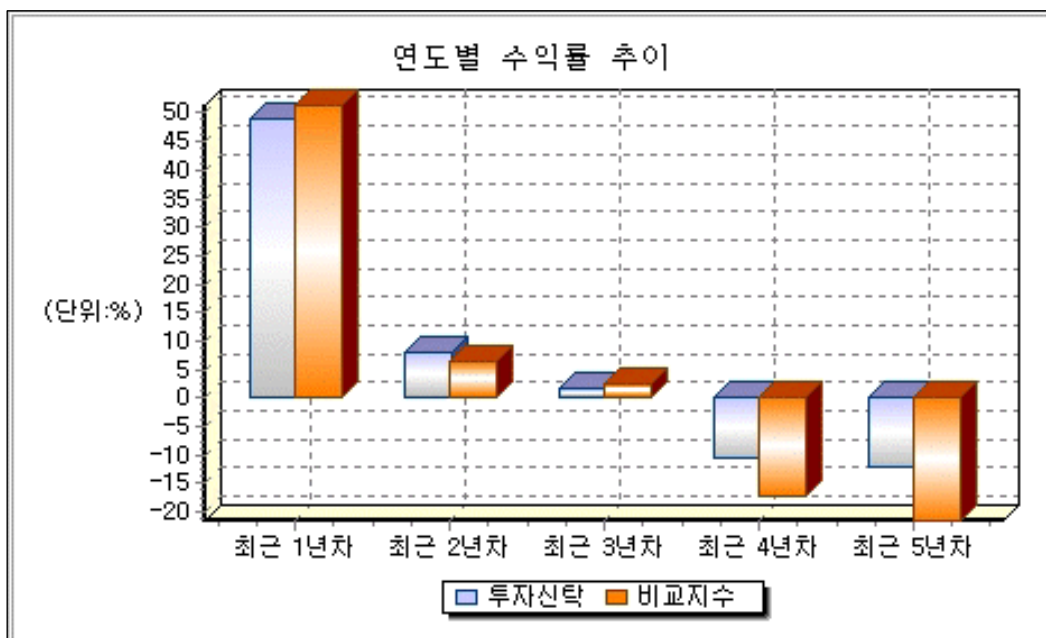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10.11.07 ~11.11.06)
투자신탁	48.93 %	8.01 %	1.69 %	-10.61 %	-11.91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21.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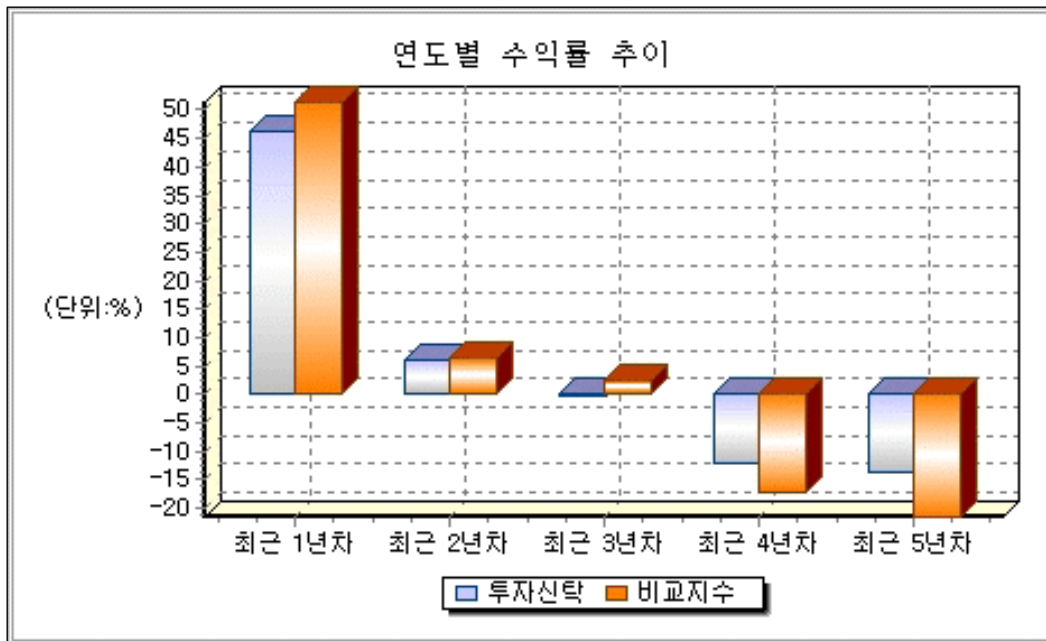


(2)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A)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10.11.07 ~11.11.06)
투자신탁	46.27 %	6.08 %	-0.13 %	-12.23 %	-13.51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21.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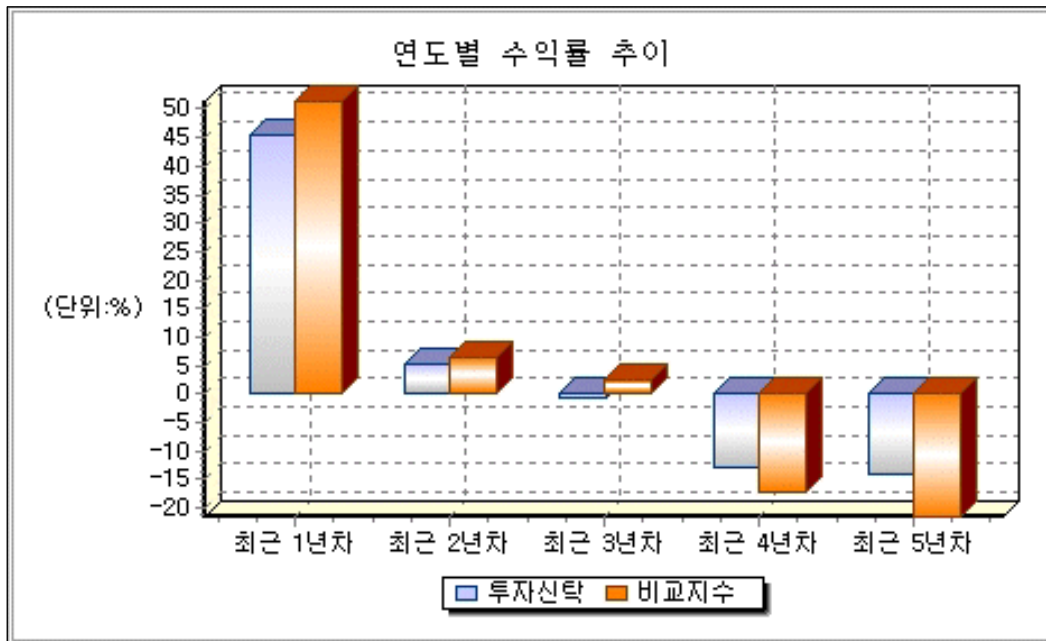


(3)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1)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10.11.07 ~11.11.06)
투자신탁	45.30 %	5.43 %	-0.73 %	-12.77 %	-14.04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21.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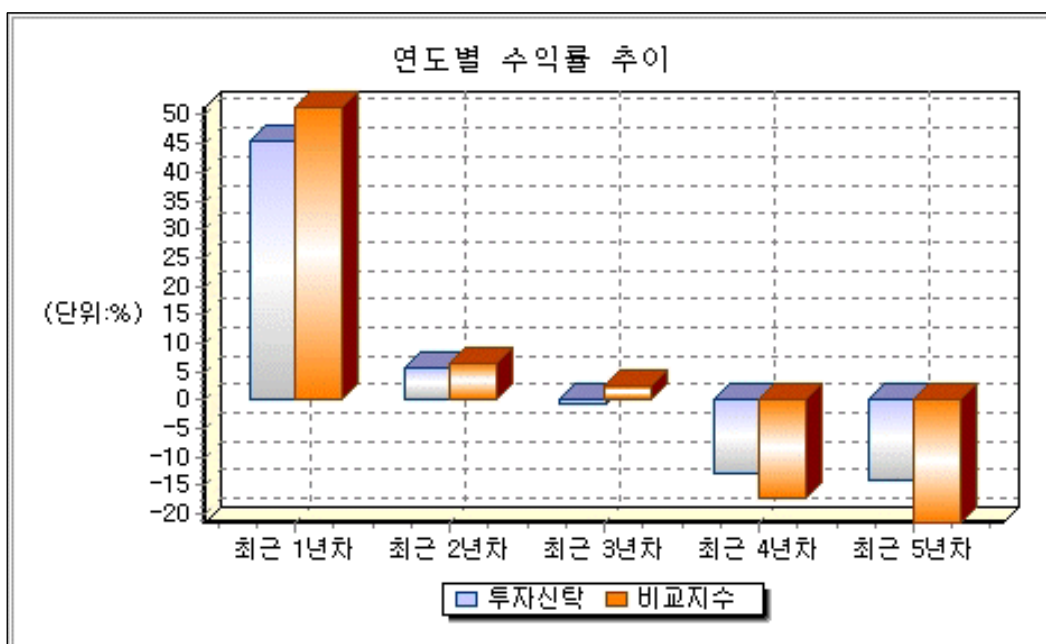


(4)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2)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10.11.07 ~11.11.06)
투자신탁	45.53 %	5.54 %	-0.64 %	-12.68 %	-13.96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21.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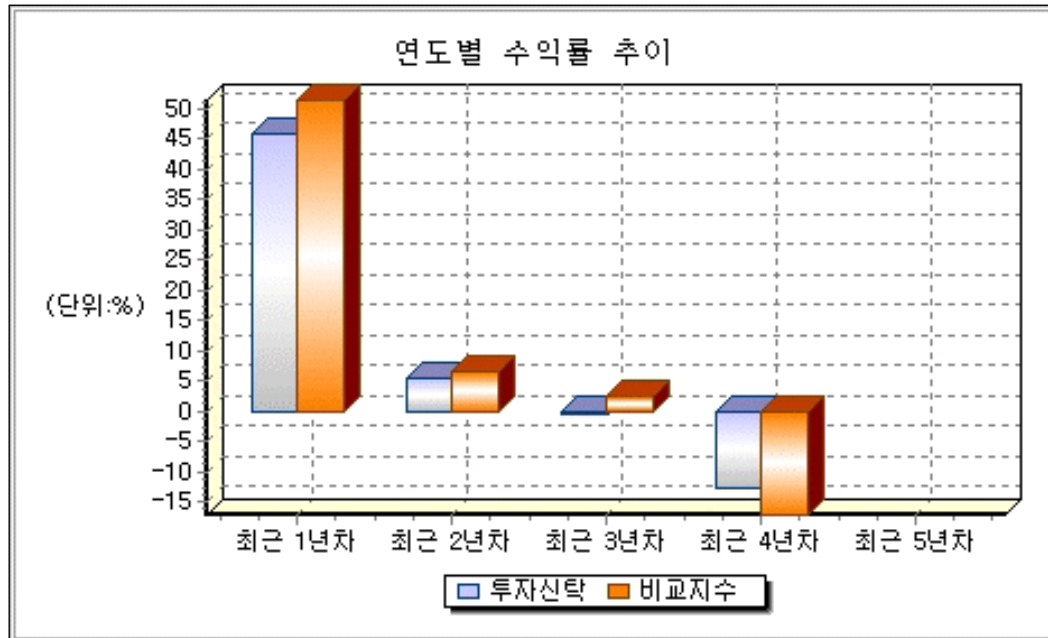


(5)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3)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투자신탁	45.67 %	5.65 %	-0.54 %	-12.59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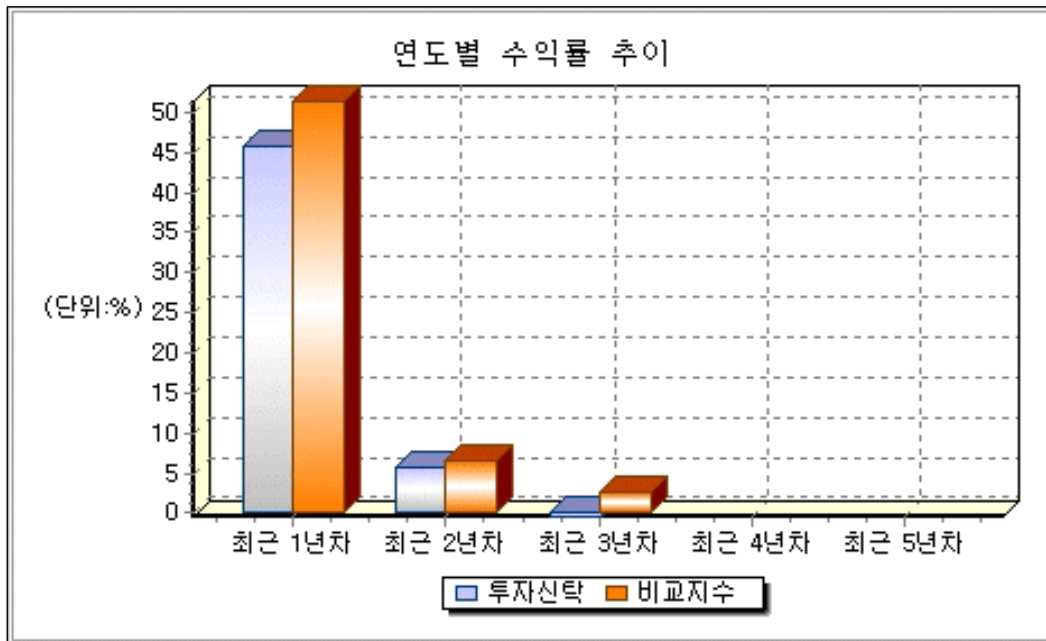


(6)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4)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45.82 %	5.75 %	-0.44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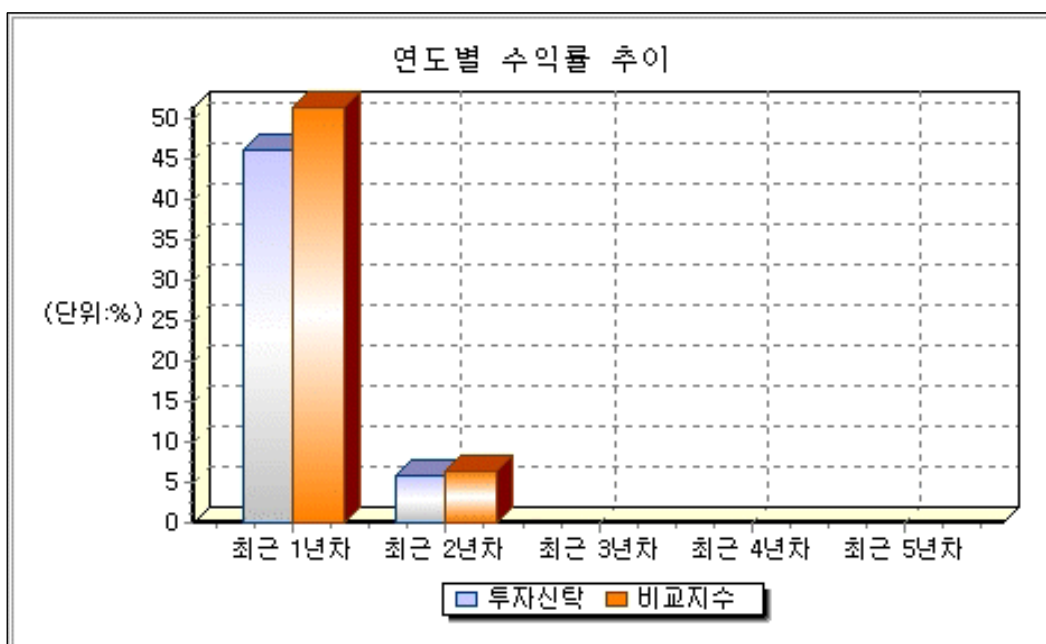


(7)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5)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45.96 %	5.86 %			
비교지수	51.37 %	6.48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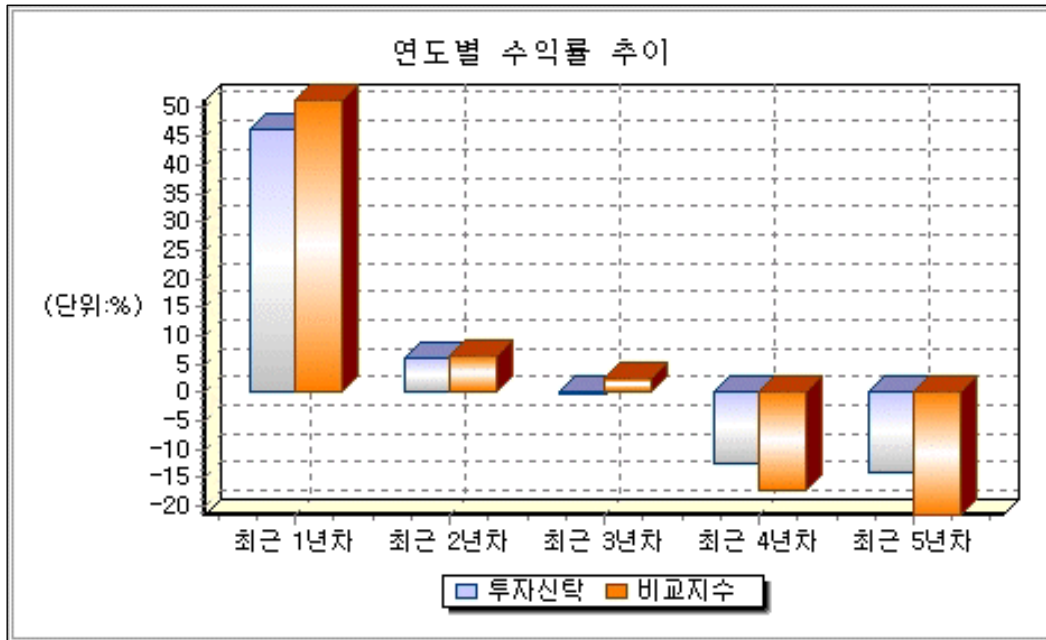


(8)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e)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13.11.07 ~14.11.06)	최근 3년차 (12.11.07 ~13.11.06)	최근 4년차 (11.11.07 ~12.11.06)	최근 5년차 (10.11.07 ~11.11.06)
투자신탁	46.11 %	5.98 %	-0.28 %	-12.45 %	-13.82 %
비교지수	51.37 %	6.48 %	2.68 %	-17.06 %	-21.50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f)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i)

- 해당사항 없음

(11)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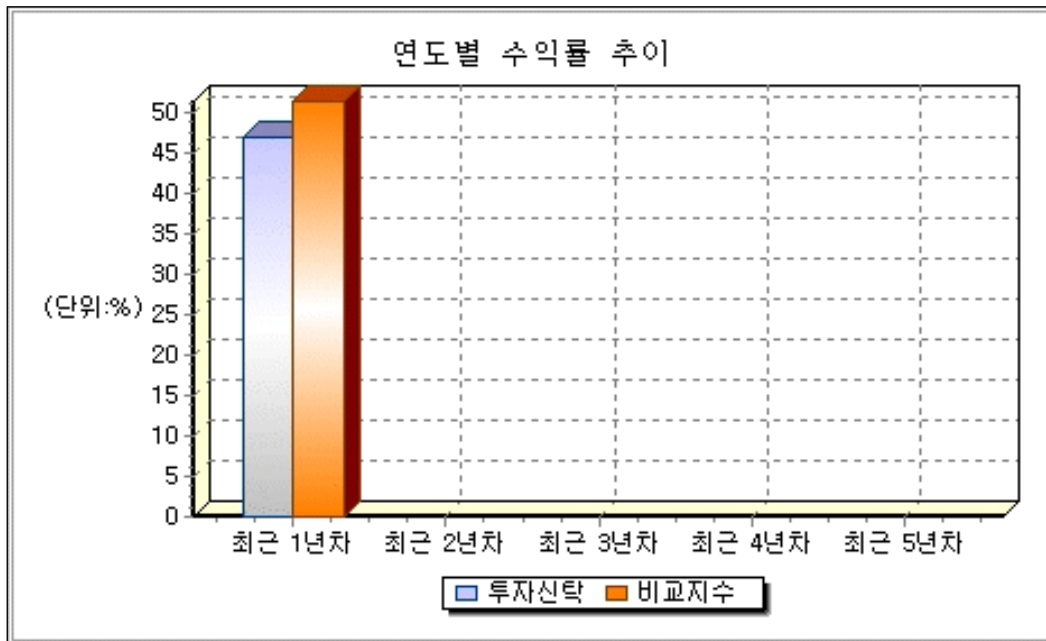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S)

연도	최근 1년차 (14.11.07 ~15.11.06)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47.05 %				
비교지수	51.37 %				

주1) 비교지수 : CSI 300 Inde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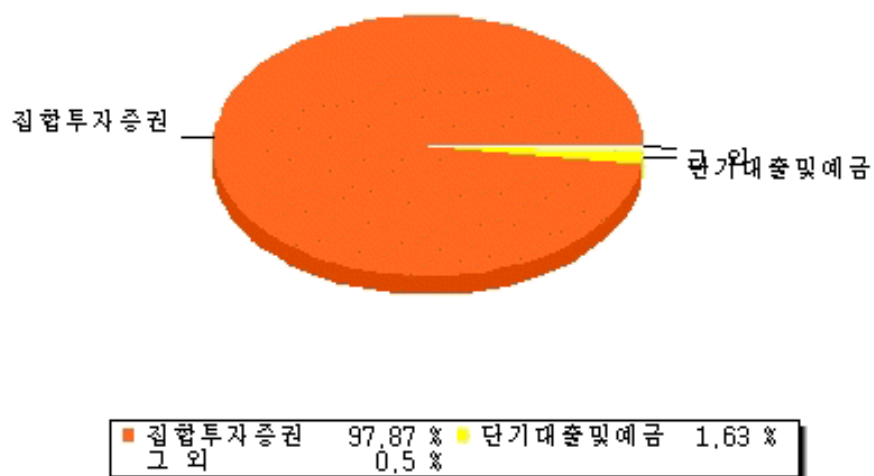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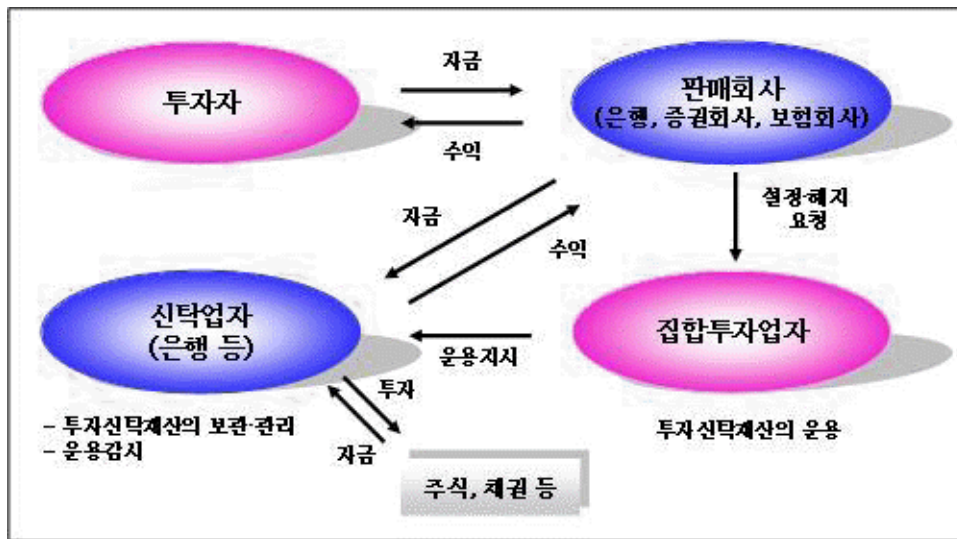
(2015.09.30 기준, 억원)

통 화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1,568	0	0	-26	0	0	0	26	8	1,576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1,568	0	0	-26	0	0	0	26	8	1,576



※ 값이 음수인 경우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연락처 : 02-3774-7600, 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09 삼성생명투자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자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2000.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2001.04 수탁고 20조 달성 2001.11 연기금 투자폴 주간 운용사 선정 2002.01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01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2005.11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8.03 관리자산 74조원 2008.04 홍콩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09 싱가포르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

회사 연혁	2010.04	삼성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1.05	Asian Investor지 선정, 한국 최우수 운용사
	2013.10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3.12	관리자산 127.4조원 달성
	2014.10	상해 리서치센터 설립
자본금	934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97.7%) 등	

주) 산정 기준일은 2014.12.3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1) 요약 대차대조표

과목	제 17 기	제 16 기
	(2014.12.31)	(2013.3.31)
현금및예치금	5,024	4,669
유형자산	21	37
무형자산	120	154
기타자산	32	64
자 산 총 계	5,197	4,924
예수부채	2,640	1,804
기타부채	209	1,001
부 채 총 계	2,849	2,804
자본금	934	934
이익잉여금	1,414	1,185
자 본 총 계	2,348	2,11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197	4,924

(2) 요약 손익계산서

과목	제 17 기	제 16 기
	('14.1~'14.12)	('13.4 ~ '13.12)
영업수익	1,385	1,100
영업비용	813	735
순영업수익	572	365
영업외수익	2	26
영업외비용	29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5	383
법인세비용	135	87
당기순이익	410	296

라. 운용자산 규모

(2015.11. 6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09,547	17,920	68,539	68,359	152,792	95,137	6,057	298	3,734	522,38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회사의 주요 업무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3)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4)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 2073-7114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 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별첨]

투자자 확인사항

[참고] A주 관련 세제 변경 가능성 및 그 대응계획

중국 당국의 과세 불투명성으로 인한 리스크

現 중국 세제 또는 규정에 의하면, 펀드(이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포함)가 중국 內 설정(permanent establishment)되지 않는 한, 그 펀드는 중국 세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자산운용(株)와 같은 QFII는 Quota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있어서는 중국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 펀드와 같이 삼성자산운용(株)의 Quota를 활용하는 펀드는 모든 중국 세법과 관련한 비용/의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QFII가 중국 내 설립된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일 경우, 그 QFII는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5%의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수익의 33%(만일 QFII가 특정 지역에 설립되었다면 15% 감면)가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외국기업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QFII가 중국 내 설립된 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대상 거래가 중국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되면 MOF(Ministry of Finance)와 SAT(State Administration for Taxation)가 공동으로 발표한 CaiShui [2005] 155에 의하여 Capital Gain에 대하여 사업체가 비과세 되며 SAT가 발표한 GuoShuiFa [2000] 37에 의하여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비과세됩니다. 반면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이 발표한 GuoFa [2000] 37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또는 다른 이자는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을 위한 소득세법의 세부 규정(the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for Income Tax Law for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nd Foreign Enterprises) 제18조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A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세 면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SAT는 GuoShuiFa [1993] 45를 통하여 B주 또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QFII에 지급되는 배당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조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같은 협약은 과세 가능한 이자 및 이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OF와 SAT가 발표한 CaiShui [2005] 11는 A주 거래 당사자에게는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중국의 세법 또는 규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심지어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에 의한 세법 및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선진국보다 일관성, 투명성이 결여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는 중국 세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QFII가 부담해야 하는 중국 세금 또는 의무는 이 펀드가 Quota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중국 세금 또는 의무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또는 前수익자가 세금 부담 없이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신탁업자의 승인에 따라, 그 과다 지급액의 환급을 그 수익자 또는 前수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이 펀드가 해당 수익자 전액 환매한 이후 이뤄지거나 잔존 금액이 과다 지급된 금액을 커버하기에 부족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과다 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그 상당액이 펀드 순자산에서 차감되어 펀드의 잔존 수익자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註) 상기 A주 관련 세제 변경 가능성 및 그 대응방안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 현재까지 파악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향후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 관련 세제의 변화 또는 중국 당국의 관련 해석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